

 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<b>보 도 자 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12. 21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: 도로운영과	담당 자 :	과장 이성훈, 사무관 박병익 ☎ (044) 201-3909, 3910	
보도 일시	2015년 12월 2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12. 2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“도로점용료 감면 · 연간상승률 10%로 제한” 시행

### - 22일부터 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 시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
  -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단일화(10~30%차등 → 조정10%)
    -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(9~5%)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%로 하향단일화
  -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(층수별 5~6.5%차등 → 일률적 4%)
    - '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(2.98%) 및 상가 소득 수익률(4.86%)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

○ 기부채납부지는 100%, 준주택\* 진입로는 주거면적 50% 감면

\* 「주택법」에 규정된 기숙사, 고시원, 노인복지주택, 오피스텔

-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(10년)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,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

- 주거 혹은 주거용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% 감면\*

\*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,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% 감면

☞ (시행일) '16. 2.12부터 시행 [도로법 개정·공포('15.8.11)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]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박병익 사무관(☎ 044-201-391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